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미한 미승인 튜닝에 대한 처벌 완화〉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11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2215211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경미한 미승인 자동차 튜닝에 대한 처벌 완화(안 제81조 및 제84조)	2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2215211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복기왕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2. 12.
3. 회 부 일 : 2025. 12.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1조 등).

Ⅲ. 검토의견

1. 경미한 미승인 자동차 튜닝에 대한 처벌 완화(안 제81조 및 제84조)

개정안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에 한해 승인받지 않고 자동차 튜닝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벌칙) ----- ----- -----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u>튜닝을 한 자</u> <단서 신설>	19. ----- ----- ----- -- <u>튜닝을 한 자. 다만, 제84조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20. ~ 28. (생략)	20. ~ 28.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 ① (생략)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삭제	

1의2. ~ 3. (생략) <u><신설></u> <u>3의2.</u> (생략) 4. ~ 6. (생략) ③ ~ ⑥ (생략)	1의2.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한 자</u> <u>3의3.</u>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81조제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가. 검토의견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속을 추가하는 것¹⁾으로, 구조변경을 통한 업무용 적재공간 확장, 캠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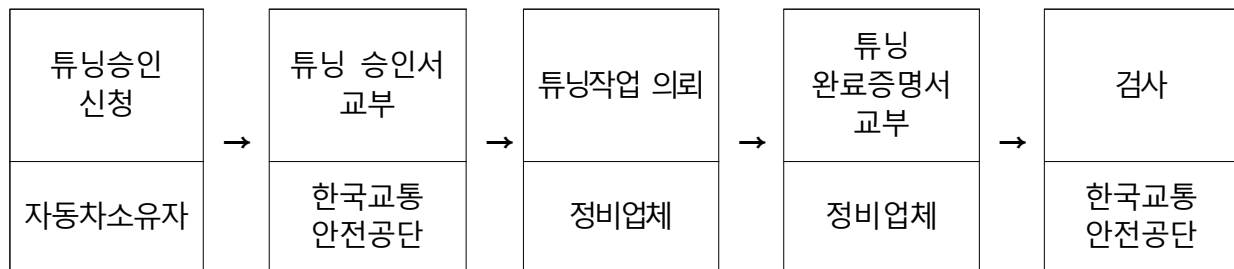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래저 목적의 실내 편의장비 설치, 외관 및 인테리어 개조, 성능 향상 부품 적용 등 다양한 형태의 튜닝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자동차소유자는 현행법 제34조²⁾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에 관한 권한은 현행 제77조제8항³⁾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어 있음.

<튜닝승인 절차>



자료 : 국토교통부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물리적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2025년 전체 튜닝 승인은 13만 1,068건으로 이 중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편에 속하는 등화장치,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보강 튜닝 승인은 5만 4,490건임. 2020년 이후 전체 튜닝승인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 승인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임.

< 튜닝 승인 건수 >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튜닝 승인 건수	242,951	227,501	178,145	144,165	141,749	131,068
등화장치,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튜닝 승인 건수	39,216	53,590	56,181	50,341	54,683	54,490

자료 : 국토교통부

또한, 2025년 전체 불법튜닝 단속 건수 5,759건 중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3,466건), 등화장치 임의변경(498건), 승차장치 임의변경(468건)이 77%를 차지하고 있음.

< 안전단속원 불법튜닝 단속 건수 >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불법튜닝	소음기 개조	58	59	38	33	22	24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554	639	1,550	2,017	3,201	3,466
	승차장치 임의변경	539	504	806	835	649	468
	등화장치 임의변경	179	393	517	794	958	498
	차체제원 변경	307	287	259	496	1,066	1,155
	불법기타	82	47	192	236	180	148
	합계	1,719	1,929	3,362	4,411	6,076	5,759

자료 : 국토교통부

현행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⁴⁾ 침해법익이 사소한 범죄행위나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과도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개정안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 튜닝에 한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 금액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⁵⁾, 과태료 수준도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84조제2항제3호의2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튜닝을 한 자에 한해 과태료로 경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미한’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튜닝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

4)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5)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3.

나. 국토교통부 의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와 원상복구명령 등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과태료 전환 필요

문 의 처
02)6788-5575

참고1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중 자동차관리법 내용

	형벌규정	행위(구성요건)	(現) 형벌		개선안
			징역	벌금(원)	
1 국토교통부					
1	간선급행버스법 (\$40-②-4)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1천만	(1) 신고사항(경미한 위반)형벌폐지 → 과태료 전환 (2) 인가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2	여객자동차법 (\$91-5)	부정한 금품수수 등 불법 자동차대여사업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3	여객자동차법 (\$92-3)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1천만	(1) 신고사항(경미한 위반)형벌폐지 → 과태료 전환 (2) 인가등록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4	여객자동차법 (\$92-13)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사용을 시작한 경우		1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시정조치명령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5	여객자동차법 (\$92-14)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1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시정조치명령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6	여객자동차법 (\$92-15)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시정조치명령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7	자동차관리법 (\$81-19)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경우	1년	1천만	경미한 튜닝 미승인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 원상복구명령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8	주차장법 (\$29-①-1)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	3년	5천만	벌금 완화(5천만원→3천만원) * 징역 3년은 현행유지
9	주차장법 (\$29-①-2)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3년	5천만	벌금 완화(5천만원→3천만원) * 징역 3년은 현행유지
10	주차장법 (\$29-①-3)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3년	5천만	벌금 완화(5천만원→3천만원) * 징역 3년은 현행유지
11	주차장법 (\$29-①-4)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3년	5천만	벌금 완화(5천만원→3천만원) * 징역 3년은 현행유지

참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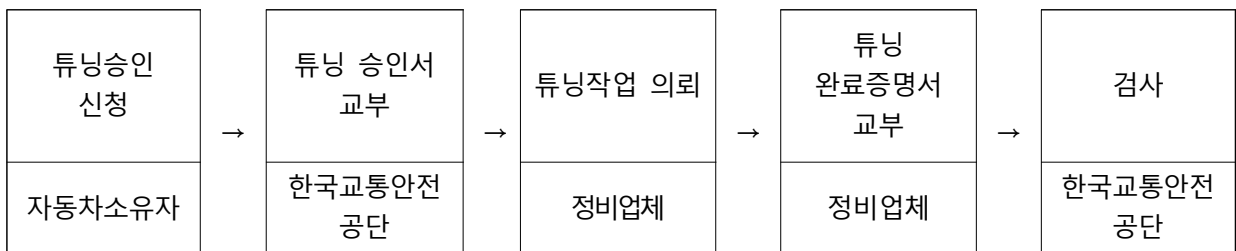
경제형별 합리화 과제 참고자료(튜닝 승인)

□ 튜닝승인 제도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이륜자동차의 경우 제52조에서 준용)에서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하며,
-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는 제81조제1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정함.

□ 튜닝승인 절차

【튜닝승인 절차】



□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안)승인 사례(사진)

-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안) 승인* 위반에 한하여 형벌 합리화를 위해 과태료로 전환

* 물품적재장치 보강, 승차장치 임의변경, 등화장치 임의변경

		
물품적재장치(적재함) 보강	승차장치 임의변경	등화장치 임의변경